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26 선고 2020나75035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항소인 A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강 (담당변호사 이민철, 문세진)

피고, 피항소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웅빈 (담당변호사 이지수)

변 론 종 결 2022. 8. 17.

판 결 선 고 2022. 10. 26.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3. 선고 2018가단9638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217,1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1.부터 2022. 10. 2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5,919,5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874,1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2쪽 제15행의 버스 뒤에 ‘(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를 추가하고, ‘자세한 경위는 별지 참조’를 삭제하는 것 외에는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원고차량과 피고의 과실 유무 및 과실비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함에도(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 피고는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넌을 뿐 아니라 허리를 숙여 전속력으로 달리는 바람에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지 못한 점, ②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신호에서 적색신호로 바뀌는 예비신호 점멸 중에도 그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보행자가 흔히 있고, 또 횡단 도중에 녹색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뀐 경우에도 그 교통신호에 따라 정지함이 없이 나머지 횡단보도를 그대로 횡단하는 보행자가 흔히 있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며, 이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보행자 신호가 녹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뀔 무렵 전후에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보행자가 교통신호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는 신뢰만으로 자동차를 운전할 것이 아니라 좌우에서 이미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또한 그의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하여 그와 같은 상황에 있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어느 때라도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도549 판결 참조) 원고차량은 위와 같은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사고 장소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과 피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고, 그 과실비율은 원고차량 40%, 피고 6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구상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2. 판단’ 중 ‘나. 구상의 범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5쪽 제11행부터 제12행까지 ‘(다만 민법 제745조 제2항에 의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는 별론으로 한다)’를 삭제한다.

○ 제5쪽 제16행의 문장 끝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예비적으로 민법 제745조 제2항에 따라 E에게 지급한 휴업손해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자 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채무를 변제한 경우라도 채권자가 선의로 증서를 훼손하거나 담보를 포기하거나 시효로 인하여 그 채권을 잃은 때에는, 변제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고, 그 대신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민법 제745조 제1항, 제2항), 원고가 E이 피고에 대한 채권을 잃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고 있지 않고 있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제5쪽 제17행 내지 제18행의 ‘이 법원의 K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을 ‘제1심법원의 K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L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로 바꿔 쓴다.

○ 제6쪽 제2행의 ‘11,529,390원’을 ‘13,835,268원’으로, 제3행, 제17행의 ‘50%’를 ‘60%’로 각

바꿔 쓴다.

○ 제6쪽 제19행 내지 제7쪽 제1행의 ‘F에 관하여 2,848,255원(= 50% × 5,696,510원), G에 관하여 608,505원(= 50% × 1,217,010원), H에 관하여 301,845원(= 50% × 603,690원), I에 관하여 182,095원(= 50% × 364,190원), J에 관하여 615,481원[= 50% × (1,497,890원 - 휴업손해액 266,928원)]’을 ‘F에 관하여 3,417,906원(= 60% × 5,696,510원), G에 관하여 730,206원(= 60% × 1,217,010원), H에 관하여 362,214원(= 60% × 603,690원), I에 관하여 218,514원(= 60% × 364,190원), J에 관하여 738,577원[= 60% × (1,497,890원 - 휴업손해액 266,928원), 원 미만 버림]’으로 바꿔 쓴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19,302,685원(= 13,835,268원 + 3,417,906원 + 730,206원 + 362,214원 + 218,514원 + 738,577원) 및 그 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16,085,571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공제금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4. 2. 2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0. 10.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3,217,114원(= 19,302,685원 - 16,085,571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공제금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4. 2. 2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0.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이 법원에서의 확장청구는 이유 없
각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재영, 판사 홍석현, 판사 최지아